

第55回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 市民行政委員會 會議錄

第11號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5年12月22日(金) 09時 37分
場 所 市民行政委員會室

議事日程

1. 鍾路區廳舍內새마을旗掲揚存置建議(案)
2. 서울特別市鍾路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 鍾路區廳舍內새마을旗掲揚存置建議(案)(洪起瑞議員 外 3人 發議)1面
2. 서울特別市鍾路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2面

(09時37分 開議)

○委員長 玄壽漢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在籍委員 11명 중 出席委員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鍾路區議會 定期會 제11차 市民行政委員會 開議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議事日程에 委員님들 수고 많 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그동안 노고가 많 습니다.

다음은 議案係長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議案係 主任 朴鍾洙 議案係 朴鍾洙입니다. 보 고드리겠습니다. 제55회 서울特別市 鍾路區議會 定期會 제11차 市民行政委員會 會議는 地方自治 法 제53조 규정에 의거 委員長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 95년 12월 1일 鍾路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된 행정 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12월 12일 議長 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종로구 청사내 새마을기 게양 존치건의(안)이 12월 20일 洪起瑞議員 外 3人으로부터 발의되어 12월 20일 議長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以上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玄壽漢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미 리 배부하여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사진행에 대하여 委員님들께 양해 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委員들의 사정과 의사진 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먼저 심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1. 鍾路區 廳舍內새마을旗掲揚存置建議(案)(洪 起瑞議員 外 3人 發議)

(09時41分)

○委員長 玄壽漢 議事日程 제1항 서울特別시종 로구청사내 새마을기 게양존치 건의(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洪起瑞議員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 랍니다.

○洪起瑞議員 안녕하십니까? 洪起瑞議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예산결산 심사하시느 라 수고 많으신 玄壽漢委員長님을 비롯해 선배 동료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 면서 종로구 청사내 새마을기 게양존치 건의 (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요지 는 '76년도부터 시청 옥상에 게양하였던 새마을 기를 '94년 10월 1일자로 서울시 방침에 의거 시청에서는 게양치 않기로 하고 현재까지 게양 치 않고 있으며 각 구청에서는 자율적으로 게양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시됨에 따라 종로구의 새 마을기 게양여부는 집행부 결정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 행정 1번지인 종로구에서 는 조국 근대화의 상징인 새마을운동의 정기를 이어가고 또 전국에서 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새마을운동의 표상인 새마을기 게양을

계속할 것을 건의코자 합니다. 제안 이유는 새마을운동은 하면 된다고 하는 국민적 자신감을 불러일으켜 한때의 가난을 몰아내고 조국 근대화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으며 국민의식개혁을 통한 선진시민 사회건설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할 일 등을 상당부분을 감당함으로써 지방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주민들의 지역사회 발전 욕구에 부응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고 지원하며, 민과 관을 연결하는 교량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을 높이 평가받은 바 있고 그 명예를 먹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새마을운동에 대한 평가는 지난 '90년 공보처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 건국 이후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에서 서울올림픽이 1위, 2위가 경제성장, 3위가 새마을운동으로 응답된 바 있고, '94년 대륙연구소와 경향신문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국민여론 조사결과도 해방 이후 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정책 중 새마을운동이 가장 잘된 일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이 영속적인 국민운동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당위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적 기대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새마을운동의 표상인 새마을기가 종로구민의 대표기관인 종로구청 광장에서 광풍처럼 불어닥치는 지방자치바람을 타고 영원히 펄럭일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玄壽漢 洪起瑞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회 회의규칙 제5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위원 있음)

네. 千相旭委員! 질의하세요.

○千相旭委員 千相旭委員입니다. 방금 洪起瑞議員의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국가가 어려울 때 국가를 지탱해 온 원동력이 바로 새마을운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 모두가 異義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시간 보낼 것 없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表決로 들어갔으면 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以上입니다.

○委員長 玄壽漢 千相旭委員님의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재청과 삼청까지 나왔습니다. 질의 종결 및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종로구 청사내 새마을기 개양존치 건의(안)은 원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特別市鍾路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09時47分)

○委員長 玄壽漢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總務局長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吳炳漢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오병한입니다.

바쁘신중에도 불구하시고 이번 정기회에서 구정발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구정질문 등 구정 전반에 걸쳐 조언을 많이 해주신 “현수환”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우리구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알맞게 직제를 조정하여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업무기능이 비슷하고 국민활동지원이 주업무인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를 통폐합하여 “사회진흥과”를 신설하고, 정부의 재난관리개선 계획에 의하여 재난예방·수습 등 재난관리업무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세원발굴 등 재정 확충기능의 강화를 위해 “부과과”를 “부과 1과”와 “부과 2과”로 분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사회진흥과는 기존 국민운동지원 기능과 생활체육진흥 기능을 민간단체 지원이나 보조를 해주는 똑같은 기능입니다. 이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는 재난관리계를 신

설해서,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수립은 물론 응급대응 체제를 구축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우리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부과 1과는 종합토지세, 재산등록세, 법인에 관한 지방세 등을 부과하고 부과 2과는 자동차세, 면허세, 주민세 등을 부과하여 세금의 성질별로 세원발굴 등 재정확충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5. 12.

제출자 : 종로구청장

의안
번호

409

1. 개정 사유

정부의 재난 관리개선계획에 의하여 재난예방·수습 등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알맞게 직제를 조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개정코자 함.

2. 주요 골자

- 국민운동지원과 및 생활체육과를→사회진흥과로(신설)
- 민방위과를→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변경 및 분장사무 조정
- 부과과를→부과 1과, 부과 2과로 조정

3. 참고자료

- 지방재난관리기구·인력보강 지침
- 시정 12200-833(95.11.11)
- 자치구 행정기구 및 정원조정승인
- 시정 1200-734(95.10.10)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중 “국민운동지원과·생활체육과”를 “사회진흥과”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6항 내지 제7항을 “제5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제5항을 삭제한다.

④ 사회진흥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운동의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새마을관련 조직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바르게살기운동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바르게살기협의회 조직·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생활체육·건강생활진흥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생활체육·건강생활관련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체육시설업 신고·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제6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를 신설한다.

②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6.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집행

제7조 제1항중 “부과과”를 “부과 1과·부과 2과”로 하고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부과 1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토지세·재산세·취득세·등록세·지역개발세 부과에 관한 사항
2. 법인에 대한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
3. 토지등급 설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⑤ 부과 2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세·차량취득세·차량등록세·면허세·도축세·마권세 부과에 관한 사항
2. 주민세·사업소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총무국) ①총무국에 총무과·기획예산과·국민운동지원과·생활체육과·민방위과 및 여권과를 둔다. ④국민운동지원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운동의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새마을관련 조직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바르게살기운동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바르게살기협의회 조직·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생활체육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체육·건강생활진흥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생활체육·건강생활 관련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업 신고·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신 설〉 ⑤민방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5. (생략) 〈신 설〉 제7조(재무국) ①재무국에 재무과·세무관리과·부과과 및 지적과를 둔다.	제6조(총무국) ① 총무국에 총무과·기획예산과·사회진흥과·민방위재난관리과 및 여권과를 둔다. ④ 〈삭제〉 ⑤ 〈삭제〉 ④사회진흥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운동의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새마을관련 조직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바르게살기운동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바르게살기협의회 조직·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생활체육·건강생활진흥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생활체육·건강생활관련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체육시설업 신고·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⑤민방위재난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5. (현행과 같음) 6.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집행 제7조(재무국) ①재무국에 재무과·세무관리과·부과 1과·부과 2과 및 지적과를 둔다.

현행	개정안
④부과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부과에 관한 사항 2. 농지세, 자동차세, 자동차취득세, 자동차 등록세 부과에 관한 사항 3. 도축세, 마권세, 면허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 4. 법인실사 및 부과에 관한 사항 〈신설〉 〈신설〉	④〈삭제〉 ④부과 1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토지세·재산세·취득세·등록세·지역개발세 부과에 관한 사항 2. 법인에 대한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 3. 토지등급 설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⑤부과 2과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세·차량취득세·차량등록세·면허세·도축세·마권세 부과에 관한 사항 2. 주민세·사업소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

○委員長 玄壽漢 總務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蔣昭秀 專門委員 蔣昭秀입니다. '95년 12월 1일 鍾路區廳長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 골자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를 사회진흥과로 통합을 하고 부과과는 부과1과, 부과2과로 증과하며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전체적으로 내부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관련 법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음 대통령령인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이 되겠습니다. 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3인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설치한다.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3개 계 이상의 하부조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설치한다. 서울특별시시장 승인은 '95년 10월 10일자로 기히 승인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건은 '95년 10월 25일 제52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다가 재검토키로

의결되었던 사안으로서 현재 그때보다 변화된 상황은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를 통합하여 사회진흥과로 개편한 타기관의 사례를 살펴보면 내무부와 시 본청은 이미 개편하였고 25개 구청 중에서 19개 구가 통합이 완료되었거나 조정 중에 있고 6개 구청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업무의 상호연계성 측면에서는 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부과과의 분과는 대통령령인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서 기구설치 일반요건으로 3개 계 이상을 적정한 설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5개 계 42명의 정원인 부과과의 분과 필요성으로 고려할 점으로 사료됩니다. 민방위과의 민방위재난관리과로의 명칭 변경은 재난에 대비하는 자치구의 의지 표시로 함축되고 시민의 이해가 용의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玄壽漢 蔣昭秀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네. 洪起瑞委員! 질의하세요.

○洪起瑞委員 洪起瑞委員입니다. 본 건은 지난 '95년 10월 25일 제52회 임시회에 상정돼 가지고 여기서 1차적으로 질의를 다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질의를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玄壽漢 朴文培委員! 질의하세요.

○朴文培委員 朴文培委員입니다. 행정기구의 증설 또는 축소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인력관계가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요합니다.

○總務局長 吳炳漢 사회진흥과로 환원되는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에 대해서는 인력 증감요인은 없습니다. 다만 직원들만 국민운동지원과에 2개 계, 생활체육과 2개 계가 합해지면서 사회진흥과로 개편되면서 3개 계로 축소되면서 그에 따라서 인원이 3명 정도가 과장 1명, 직원 2명이 부과과를 부과1과, 2과로 분리하는 것은 직원만 증과가 되면서 부과3계에 1명만 늘려서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민방위과의 민방위재난관리과가 기술직등 4명이 신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범위 안에서 우리 정원의 증감은 없습니다. 범위 안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文培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玄壽漢 네. 丁昌熙委員! 질의하세요.

○丁昌熙委員 丁昌熙委員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앞으로 맡게되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6년도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吳炳漢 우선 저희들이 재난관리과가 사실 좀더 일찍 이러한 기구가 신설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 행정에 있어서 제일 크게 부각되는 것이 청소이고 도시의 재난입니다. 도시에서 재난이 생기면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소방소에 일부 기능이 있지만 체계적인 재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소와 각 과의 하수과는 하수 맨홀, 토목과에서는 도로 파인 곳 그 다음 건축과에서는 위험 건축물 붕괴 우려가 있는 축대 등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각 기능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매일 순찰이라든가 사전 붕괴 우려가 있을 때 현장에서 기능별로 자기 소관이 중복됐을 경우에는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난관리과에서 이런 곳의 복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재난관리과에서 그런 것을 말아서 바

로 우리 구민에게 위해가 갈 수 있는 시설물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하고 그 다음 복구할 수 있는 기능부서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을 보유하는 게 새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대대적으로는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토록 하고 있고 또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종합적인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수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대비에 대해서 물자나 자원장비를 파악해서 동원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유하고 그 다음 소방소, 경찰 이런 소관 부서에 협조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신설된 계의 봉급 등 행정지원 업무는 예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새로운 순찰기능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것은 종전에 가지고 있던 차량과 장비를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丁昌熙委員 재난 예방이라고 하면 향후에 유발할지 모르는 위험시설물에 대한 응급조치식의 보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적치물에 대한 정리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각각 겹쳐서 이루어질 텐데 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예산은 어떠한 예산의 목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吳炳漢 만약에 맨홀뚜껑이 어젯밤에 없어졌다. 그런데 거기에 만약 차량이 빠져서 전복되면 대형사고가 유발된다 할 때 이제까지 하수과에서 맨홀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응급조치식이기 때문에 기본 장구만 그러니까 차량 1대 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기능직원만 있으면 우선 기능별로 순찰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현장에 그걸 즉시 배치해 가지고 그런 조치가 우선이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은 필요가 없고 만약 복구를 재난관리과에서 어떤 웅벽이 무너졌다 했을 때 복구를 직접 맡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구할 수 있는 예산은 토목과면 토목과에 하수과면 하수과에 소관 기능별로 해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구를 전담시키든지 하는 그 시점까지만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丁昌熙委員 그럼 별도로 재난관리과의 복구반이나 예방전담반이 편성돼서 운영이 안 됩니까? 각 소관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인원도 활용하고 예산도 각 과의 목중에서 집행을 하고 취합해서 통괄하는 기능만 갖습니까?

○總務局長 吳炳漢 네. 그렇습니다. 그걸 다만 재난관리 측면에서 그러한 기능별 부서를 대대

적으로 체계를 확립해서 매일 대책회의를 한다던가 그 다음 실질적인 복구를 기능부서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하고 우리 필요하다면 총괄되어 있는 예산을 사용해서 복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丁昌熙委員** 복구반이나 예방반을 많은 주민들한테 앞서가는 행정에 대한 홍보도 또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복도 통일시키고 업무가 주민들한테 신뢰감을 더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같이 겹쳐서 이루어져야 효과가 극대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복이라던가 장비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신뢰감이 가게끔 해서 그냥 통괄하는 업무로써 명실상부한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재난방지의 역할을 또 예방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진흥과로 통합된 이후에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새마을운동이 또 사회생활체육진흥이 좀 위축이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吳炳漢**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물론 다만 우리 국민운동이라던가 주민과 관련된 생활체육진흥을 위해서 보상이나 예산을 지원하는 업무가 오히려 실무담당 공무원들이 담당하기에 예산서 집행까지 간섭을 한다면 민간단체의 독립적이고 사회의 융통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로 통합되면 공무원들이 좀더 한 차원 높여서 지역의 향상이라던가 시민의 의식 함양을 위한 좀더 고차원적인 업무에 매진을 하고 예산보조금 지원같은 것은 민간단체에서 사업계획 수립을 하면 보상을 지원한다든가 해서 자율적으로 민간단체가 사업을 수행하고 독립성이 강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丁昌熙委員** 지금 생활체육에 대한 활성화 자원이라는 것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지원이 부분적으로 상부상조하는 효과를 통합된 이후에 기대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생활체육 업무의 자원과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가 분리돼서 운영되는 그런 비효율성은 있었습니다만 통합된 이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효과가 고양되리라고 기대를 해보면서 종전보다 더 활성화된 그러한 효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생활체육에 대한 활성화 자원이라든가 또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의 자원이 부분적으로 상부 상조하는 효과를 통합된 이후에 기대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과가 다르기 때문에 생활체육업무의 자원과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의 자원이 분리돼서 운영되는 그런 비효율성도 있었습니다만은 통합된 이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효과가 고양되리라고 기대를 해보면서 종전보다 더 활성화된 그러한 효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부과1과, 2과로 분과가 되는 입장에서 부과1, 2계와 조사평가계가 부과1과로, 부과3계, 4계가 부과2과로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부과4계에서 맡고 있는 업무 중에 주민세나 사업소세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부과가 되는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타구청에서는 부과1과에다 조사평가계를 뒤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정리된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세와 사업소세에 대해서 법인에 대한 조사평가가 없이 그냥 주민세나 사업소세의 부과가 가능한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吳炳漢** 실무과장인 賦課課長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賦課課長 康聖喆** 賦課課長 康聖喆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財務課의 운영 상황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을 준비해 왔습니다만은 분장안을 가지고, 사실상 현재와 같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賦課課에서는 우리 구세인 종합토지세, 재산세, 그 다음 면허세, 사업소세를 비롯해서 시세 11개 세목. 그래서 15개 세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賦課1係와 賦課2係는 사실상 업무가 같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부동산취득세와 부동산등록세에 대해서 조사 부과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賦課3係는 자동차세와 자동차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기타 도축세나 마권세 등을 하고 있고 賦課4係는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담당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調査評價係는 법인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동산취득세, 부동산등록세를 담당, 처리하고 있습니다. 있으면서 법인실사를 통해서 부동산취득세, 등록세와 같이 주민세하고 사업소세 등으로 분업 여부를 조사해서 해당 係에 임대를 해서 부과를 하

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면 賦課 1, 2係는 부동산에 관한 제세를 담당하고 있고 調査評價係는 법인에 대한 부동산제세, 3, 4係에 속한 자동차 관련세와 주민세 관련세 등에 대해서 혹시 누락이 된 것이 조사되었을 때 조사를 해가지고 해당 係에 넘겨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처리의 흐름을 보면 賦課 1, 2係 그리고 調査評價係로 분리가 되고 그 다음 賦課 3係는 대부분 시세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을 주로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법인조사관계에 있어서 혹시 차질이 있을까 염려되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賦課 3係와 4係 업무에서 부과3계의 자동차세는 이것이 전부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계산소에서 되어 있는 모든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자동차 관련세가 부과 되고 있고 부과4계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 주민세 중 개인균등할주민세와 법인균등할주민세는 저희들이 전부 조사해 가지고 부과를 하지만 나머지 소득에 관련된 모든 주민세는 세무서에서 조사, 결정을 한 다음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만 하고 있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세 관련업무의 자동차세 관련업무에 대해서는 법인 조사시에 그렇게 많은 양이 해당되지 않았습니까. 혹시 누락이 된 게 있으면 그때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丁昌熙委員** 지금 부과과의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또 지방자치시대에 부과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재원을 확보해 나가는 부분에 더욱 치중하는 뜻에서 부과를 한다는 것은 매우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조사평가계는 이와 부과가 되면서 법인에 대한 부과, 징수, 법인실사계획 및 집행은 법인조사계로, 부동산 과세표준액 조사, 책정 및 시가조사와 토지등급 설정 및 수정 과세대상 물권의 중별지정 및 수정은 토지평가계로, 이렇게 분계를 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 아니겠습니까? 조사평가계의 업무가 법인문제라든가 이런 부동산의 제반적인 것이 전부 포괄적으로 되다보니까 업무가 하기에 따라서 1개 계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과중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賦課課長 康聖喆**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조

사평가계를 토지평가계와 법인조사계로 분할을 해가지고서 업무를 거기에 따라 논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丁昌熙委員** 예.

○**賦課課長 康聖喆**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평가는 그동안 토지등급을 설정하는 것이 사실상 주업무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 공시지가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이 업무가 그전에는 토지관리과에서 처리하고 있었고 지금은 현재 지적과의 토지 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업무하고 사실상 중복이 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사된 공시지가를 근거로 해서 토지등급이 결정되는 그런 변형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건설부가 주관이 돼서 조사·결정된 공시지가의 예를 가지고 토지등급이 바로 적용이 되도록, 그러니까 각 구청에서 따로 토지등급을 정해 가지고 토지등급을 평가하는 그런 불필요한 작업이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사실상 그렇게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년부터는 토지평가계 업무가 사실상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總務局長 吳炳漢**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금의 공시지가의 변화에 따라서 세금의 감면과 중과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지적과에서는 순수하게 도시개발의 여건에 따라서 공시지가를 결정하며 또 세무과에서는 거기에 연동해서 별도로 조사해 과세표준액을 조사하는 것이 현재로는 이원화가 돼서 좋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공시지가를 조사하는 조평계의 직원들도 부담이 없어야 하지 바로 연계가 돼서, 세금의 감면문제가 따르게 된다면, 부담이 없어서 우선 이원화를 시켜놓고 나중에 정부에서 그 공시지가를 바로 과세표준이 될 때 그 때는 **丁委員**님 말씀대로 중복된 업무를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원화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丁昌熙委員** 지금 이원화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견 책임행정을 애매모호하게 주민들한테 혼동을 많이 줄 수 있는 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등급 자체가 구거하천점용료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매년 공시지가는 어느 정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토지등급은 매년 한 20~30%씩 상향 조정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사람이나 구거하천을 점용해서 쓰고 있는 사람이나 내용별, 성질별로 봐서는 큰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사람은 지하공간도 쓸 수 있는데 반해서 구거하천은 지하부분은 쓸 수 없다는 그런 불이익이 뒤따릅니다만 더 많은 점용료를 내야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토지등급업무가 지적과라든가 세무과라든가 또 조사평가계가 세분되어서 한다는 것은 평장이 불합리하다고 평가되어서 차라리 그러면 조사평가계 업무 중에서 토지등급 설정 및 수정에 대해서는 소관 책임있는 과로 업무를 이관시켜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적절하게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걸로 타과에서 맡고 있는 토지평가 업무를 조사평가계에서 아주 전담해서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賦課課長 康聖結 賦課課長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금년도부터 공시지가를 활용하는 것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토지등급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30% 선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토지등급이 많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만 그것이 일률적으로 30% 정도 적용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도지사하고 서울시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거기에 과표결정률을 정하도록 그렇게 관계법이 개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丁昌熙委員님께서 걱정하신 공공용지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결정되는 것이라든가 또는 토지등급이 결정되는 그런 차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도 지사가 결정하는 공시지가의 적용으로 해서 재산세 과표를 결정하는거나 또는 공공용지를 점용함으로써 물어야 되는 그런 사용료 점용료에 대한 과표와 같은 수준으로 결정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 적용률이 시행이 돼서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丁昌熙委員 공시지가적용률을 시·도 지사가 정해서 할 수 있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게 내년부터 되는데 지금 현재 30% 적용을 할 때까지도 월초에 15% 선에서 배 정도가 토지등급이 상향조정되어 왔거든요.

○賦課課長 康聖結 그렇습니다. '89년도부터 한 15% 수준에서 7년 사이에 30% 수준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丁昌熙委員 지금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평가에 대한 조정절차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만 이 토지등급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전혀 참여할 수 있는, 어떠한 토지는 상대적으로 인근 토지에 비해서 더 불이익을 받는다는가 이익을 본다든가 이런 걸 조정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전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경우에 지금 소관하는 부서가 지적과 세무과와 또 법인조사계에 토지등급조정계가 이렇게 해서 업무를 세군데서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어디가서 항의를 하고 조정을 하고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지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 봉착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전담해서 책임있는 대표 부서를 정해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토지등급 조정에 일부 주민 몇 사람이 위원회에 참여해서 하든가 지금 토지등급 역시도 어느 지역은 불이익을, 타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종로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형평에 맞지 않고 그런 것이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세금 자체가 미비하기 때문에 별 신경을 안썼습니다만 이제는 세금관계, 토지에 관련된 일련의 세금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땅값은 올라가지 않는데 재산세는 40~50% 씩 올라간다는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여기 저기서 분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만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賦課課長 康聖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丁昌熙委員님 말씀하신 바와 같은 것이 작년까지 사실상 그렇게 시행되었습니다. 토지등급 결정과 공시지가 결정이 서로 상관관계가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지방세에 대한 관련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토지등급을 결정했습니다만 거기에 시민대표들이 참석해서 심의를 철저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설령 한두 사람이 참석은 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토지필지 건수가 6만여 건이 됩니다. 그러나 그 방대한 숫자를 한두 사

람이 앞서서 챙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불만을 갖고 있는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상태가 사실 못됐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단 전체적으로 토지등급을 결정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그전에 등급이 적게 조정되었던 것이 많이 올라가지고서 너무 많이 올랐다 하는 민원이 발생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저희들이 설득하고 답변하는데 많은 시일이 걸리면서도 그래도 상당히 안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과세가 이루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모든 것이 법제화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丁昌熙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玄壽漢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總務局長님! 課長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5회 종로구의회 정기회 제11차 시민행정위원회를 산회하고 오늘 참석하신 위원 전원은 '95년도 12월 23일과 24일, 25일 3일간 이곳 시민행정위원회에서 행하는 현장실사 및 심사보고서 채택회의에 오전 10시까지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30分 散會)

玄 壽 漢
吳 錦 南
鄭 泰 淳
朴 文 培

洪 起 瑞
千 相 旭
洪 承 台

安 哲 柱
沈 載 得
丁 昌 熙

○出席專門委員

蔣 昭 秀

○出席議員

洪 起 瑞

○出席關係公務員

總 務 局 長
總 務 課 長
賦 課 課 長

吳 炳 漢
金 春 植
康 聖 喆

○出席委員 10人